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3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22년 11월 15일
제안자 : 문화체육관광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폐지조례안 시행일 이전 미디어재단 티비에스의 운영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연장하고, 향후 인적·물적 재원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보장하기 위하여 부칙을 수정하고자 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가. 폐지조례안의 시행일을 2024년 1월 1일부터로 함(안 부칙 제1조).
- 나. 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함.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부칙 제1조 중 “2023년 7월1일” 을 “2024년 1월 1일” 로 한다.

안 부칙 제2조 및 제3조는 각각 삭제한다.

<수정안조문대비표>

현 행	폐 지 안	수 정 안
<신 설>	부 칙 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<u>2023년 7월1일부터 시행</u> 한다.	부 칙 제1조(시행일) ----- <u>2024년 1월 1일</u> ----- ---
<신 설>	제2조(직원 채용에 대한 특례) 서울특별시장(이하 시장)은 이 조례의 발의 당시 미디어재단 티비에 스(이하 재단)에 소속된 직원(계약직 직원을 포함 한다)이 희망하는 경우에 는 운용 중이거나 신설 될 서울특별시 출자·출연 기관에 우선적으로 채용 하며 신분이나 급여 등 에 있어 불이익한 처우 를 하지 아니한다.	<삭 제>
<신 설>	제3조(자산 등에 관한 조 치) 이 조례 시행 전이라 도 시장은 재단과 출연 자산 정리에 관한 준비 행위를 할 수 있다. 다만 시장은 재단이 향후 독 립된 언론으로서 지속할 수 있도록 자산 정리에 있어 재단의 의견을 적 극 반영하여야 한다.	<삭 제>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

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(tbs)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폐	지	안
			부	칙
<u><신 설></u>		<u>제1조(시행일)</u>	이 조례는	2024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.